# 한국형 자연공존지역(OECM)
# 매뉴얼

환경부-국립공원공단

# 목 차


1. 한국형 자연공존지역 매뉴얼(K-OECM Tool-kit) 개요 ····· 1
1) 목적 ····· 1
2) 주요 내용 및 활용 방향 ····· 1
3) 개발 과정 ····· 1

2. 자연공존지역(OECM) 개념 ····· 2
1) 논의 배경 및 주요 이슈 ····· 2
2) 글로벌 현지-내 보전목표 설정과 OECM 개념 등장 ····· 2
3) OECM 관련 주요 개념 ····· 3
4) OECM 등록 해외사례 ····· 5

3. 자연공존지역(OECM) 글로벌 표준 ····· 7
(2018) CBD Decision 14/8 annex III: OECM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문 ····· 7
(2019) IUCN Guideline: Recognising and report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 7
(2022) Site-level tool for identify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 ····· 8
(2023) Site-level tool for identify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 ····· 10

4.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기준(안) ····· 11
1)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시 고려사항(기본원칙) ····· 11
2)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결정인자(Criteria) 및 발굴 과정(안) ····· 11

5.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단계(과정)별 주요 검토사항 ····· 14
1) 준비 단계 ····· 14
2) 1단계 선별(1차 Screening) ····· 15
3) 2단계 공감대 형성(이해관계자 확인, 공감대 형성, 인식 확산) ····· 17
4) 3단계 발굴·등록(개별 대상지 심층 확인, 정보구축 등) ····· 18
5) 자연공존지역 최종결정서 생성 ····· 20

6.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체계(안) ····· 22
1) 자연공존지역(OECM) 관련 국가 목표 ····· 22
2)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체계(안) ····· 24

[참고]
1. 자연공존지역 주요 검토대상 유형(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 25
2. 자연공존지역 검토를 위한 참고정보/링크 ····· 26

# 1. 한국형 자연공존지역[1] 매뉴얼(K-OECM Tool-kit) 개요

## 1) 목적

- OECM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토대로 한 관계자의 인식 증진 및 대국민 홍보 기초자료 제공
- 국가 차원에서 OECM 관련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OECM 발굴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 제공
-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접근은 물론 민간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해설서 제공

## 2) 주요 내용 및 활용 방향

- OECM 개념: 배경, 정의, 사례 등
- OECM 글로벌 표준 주요내용 요약(원문 링크: 영문/번역본)
- 한국의 OECM 명칭, 발굴 기본원칙, 결정인자, 적용 시 고려사항, 발굴 단계별 검토 사항 등

## 3) 개발 과정

- IUCN Framework Partnership Project의 일환으로 IUCN-환경부(국립공원공단) 공동으로 "한국의 OECM 발굴사업('22.~'24.)" 추진
- 의견수렴을 위한 K-OECM Tool-kit v 1.1 개발 ('22.5.)
- '국가보호지역 확대 포럼('22.7 ~ )[2]' 운영(년 4회)을 통한 관련 내용 공유 및 의견수렴
- IUCN-환경부(국립공원공단) 공동주관 OECM 역량강화 워크숍('22.10.18.~20.)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총 30명, '22.10월~11월)
- K-OECM Tool-kit(draft v 1.1) 의견 수렴(관계기관 및 전문가 참여): '23.5.20. ~ '23.7.5.
- 의견수렴을 위한 K-OECM Tool-kit v 1.2 개발 및 공유('23.8.)
- K-OECM Tool-kit v 1.2 시범 적용 및 시사점 도출('23.8.~)
- 2023년 '국가 보호지역 확대 포럼('23.~ )[3]' 운영
- K-OECM Tool-kit v 1.2 시범 적용 결과 공유/툴킷 보완방향 논의('24. 6., '24년 1차 포럼)
- K-OECM Tool-kit v 2.0 개발 ('24. 10.)
- K-OECM Tool-kit v 2.0 부처 의견수렴 및 보완('24.12.)

---

1) 다양한 번역어 사용에 따른 혼선 저감(4개 이상의 다양한 용어 사용), OECM 개념을 반영한 한국적 용어 사용 공감대 형성 → 국가차원의 한국적 용어 사용에 대한 토론(IUCN 역량강화 워크숍/3차 포럼, '22.10.) → 1차 후보 용어 도출 → 전문가 설문조사('22.10.~11., 30여명 참여) → '23년 '1차 국가보호지역확대포럼'에서 국문 명칭을 (가칭)**"자연공존지역"** 사용 합의('23.4.25.)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24-2028(관계부처 합동, '23.12.) **"자연공존지역"명명**

2)'22년 포럼 총 4회 운영(총30명 위원 참여(정부기관 회원 13명, 연구기관/대학/시민사회단체 회원 17명))

3)'23년 포럼 구성(위원장 2명, 정부기관 13명, 연구기관 6명, 전문위원 14명), 총 4회 운영,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마련 연구', '우리나라 자연공존지역(OECM) 확인 지침(안)' 관련 정보공유 및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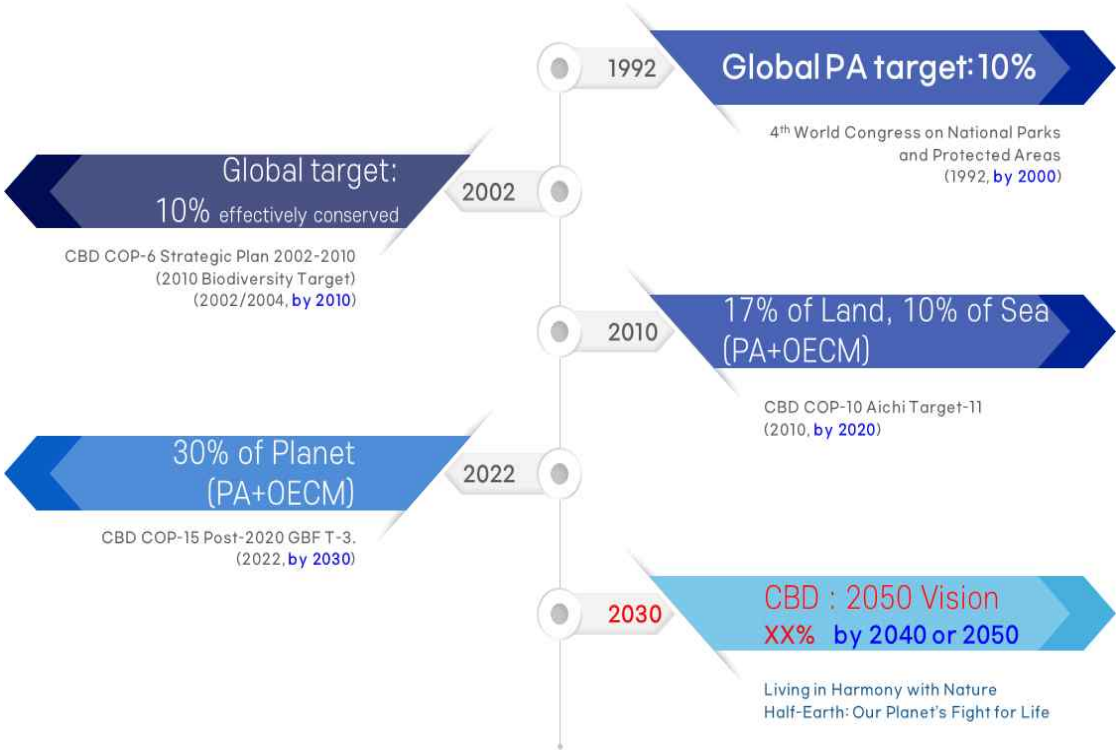
## 2. 자연공존지역(OECM) 개념

### 1) 논의 배경 및 주요 이슈

-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대신하는 새로운 글로벌 보전 목표(K-M GBF) 설정 ('22. 12. 캐나다 몬트리올)
- 글로벌 보전지역(보호지역 및 OECM) 목표 설정: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 보전(30by30)
- 정부 주도의 법·제도적 보호지역과 더불어 지정·관리 목적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현지-내 보전 성과에 기여하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민간 등 다양한 거버넌스 유형 포괄)
- 국가 차원의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반 마련(국가적 특성을 반영한 확인 지침 및 절차 마련, 범부처는 물론 전 사회적인 인식 확산 형성 등)
- 기존 보호지역 체계와 자연공존지역(OECM)을 연계한 국가 보전지역 체계 정립 추진
- 현지-내 보전(in-situ conservation)의 양적·질적 목표 성취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공감대 형성

### 2) 글로벌 현지-내 보전목표 설정과 OECM 개념 등장

- 글로벌 보전목표 설정 흐름(1992~ ) :
  - ✓ 전 지구차원의 보전목표 설정은 제4차 공원총회에서 채택한 "전 지구의 10%를 보호지역"으로 보호하는 목표였으며, 이후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이를 계승하여 지속적 목표 설정




**글로벌 보전 목표 흐름**

- OECM 개념 등장
  - ✓ 생물다양성협약(CBD) 전문[4]의 현지-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8조)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특별한 수단(special measures)을 기술하고 있으며, OECM의 기타 효과적 수단이라는 개념의 연원은 이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 공식적 용어(OECM)는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11(Aichi target-11)에서 처음 등장
  - ✓ OECM 용어 등장과 더불어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CBD COP-14(샤름 엘 세이크, 2018)에서 공식 채택

## 3) OECM 관련 주요 개념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ures) 개념 정의 (CBD Decision 14/8 (2018))
  - ✓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 2018)에서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 문화적·영적·사회·경제적·기타 지역적으로 연관된 가치의 긍정적이고 장기지속적인 현지-내 보전 성과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운영·관리되는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으로 OECM 개념 정의
  - ✓ *a geographically defined area other than a Protected Area, which is governed and managed in ways that achieve positive and sustained long-term outcomes for the in 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with associated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and where applicable, 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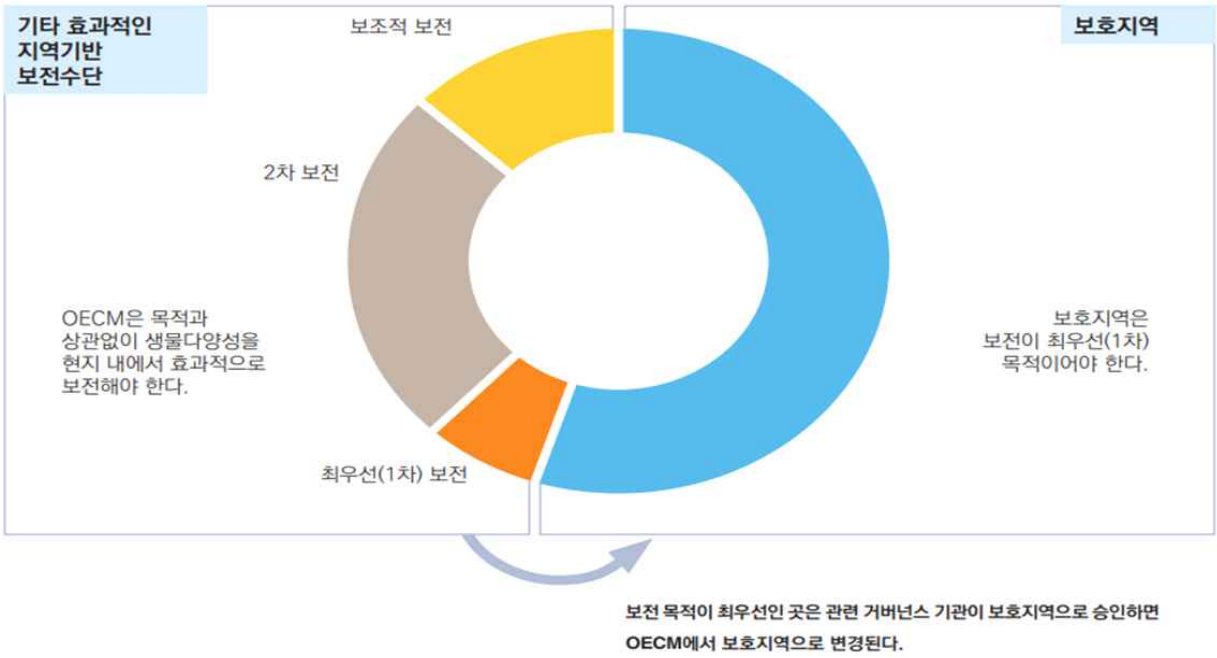
> *< 참고 > 보호지역(Protected Areas) 정의 (IUCN, 2008)*
>
> *clearly defined geographical space, recognized, dedicated and managed to achieve the long-term conservation of nature with associated ecosystem services and cultural values through legal or other effective means*
>
> 법률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와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자연의 장기적 보전을 위해 지정, 인지,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

- **2030 글로벌 보전목표(CBD, 2022): K-M GBF Action Target 3**
  - ✓ 육지, 육수, 연안·해양(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의 최소 30%가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 체계(생태계대표성, 연결성, 공평한 거버넌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전·관리(IPLC 권리 존중)
  - ✓ Ensure and enable that by 2030 at least 30 per cent of terrestrial, inland water, and of coastal and marine areas, especially area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biodiversity

4) CBD 전문은 서문, 42개 조항, 부속서 2개(확인 및 감시, 중재 및 조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13개 항목을 기술하고 있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전시스템 내용에 보호지역과 함께 특별한 수단(Special Measures) 기술

and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are effectively conserved and managed through ecologically representative, well-connected and equitably governed systems of protected are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recognizing indigenous and traditional territories, where applicable, and integrated into wider landscapes, seascapes and the ocean, while ensuring that any sustainable use, where appropriate in such areas, is fully consistent with conservation outcomes, recognizing and respecting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ncluding over their traditional territories.

✓ 주요 모니터링 지표: 핵심지표(Headline Indicator: (3.1) Coverage of protected areas and OECMs), 보조지표(Component indicator: PA coverage of KBA (key biodiversity areas), Protected Area Management Effectiveness (PAME), ProtConn, etc) 등




OECM과 보호지역의 관계 (IUCN, 2019)

## 4) OECM 등록 해외사례

- UENP-WCMC WD-OECM 등록 현황: 15개국, 6,482개소(72개 유형) 등록(2024년 8월 기준)

| 지정수준 | 국가 | 지정유형 | 개소 | | 면적 | |
|---|---|---|---|---|---|---|
| | | | 육상 | 해양 | 육상 | 해양 |
| 국제적 | 콜롬비아 | 생물권보전지역 | 1 | 2 | 61,233.1 | 43,291.5 |
| | | 람사르 습지 | 4 | - | 15,731.8 | 426.0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생물권보전지역 | 9 | 1 | 85,606.7 | 582.3 |
| 국가적 | 모로코 | 사냥보존구역 등 2개 유형 | 325 | 13 | 144,111.5 | 405.1 |
| | 부탄 | Key Biodiversity Area | 12 | - | 480.0 | - |
| | 캐나다 | Recreation Site 등 36개 유형 | 264 | 63 | 419,524.9 | 324,742.9 |
| | 쿡 아일랜드 | Protected forest | 1 | - | 2.1 | - |
| | 콜롬비아 | Watershed 등 13개 유형 | 45 | 3 | 102,127.7 | 6,904.3 |
| | 알제리 | Cultural Park | 5 | - | 1,234,580.2 | - |
| | 영국령 건지 섬 | Site of Special Significance | 7 | 3 | 6.5 | 0.5 |
| | 일본 | OECM | 152 | 7 | 460.7 | 1.4 |
| | 대한민국 | 학술림 등 4개 유형 | 4 | - | 118.2 | 0.9 |
| | 오만 | Nature Reserve | - | 2 | 174.6 | 173.5 |
| | 페루 | Conservation Concession | 1 | - | 1456.9 | - |
| | 필리핀 | 지역해양보호지역 등 5개 유형 | 61 | 117 | 38,909.8 | 34,486.6 |
| | 스웨덴 | Voluntary set-aside areas | 5,364 | 1 | 960.5 | 0.4 |
| | 에스와티니 | OECM | 8 | - | 81.0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식물원 | 6 | 1 | 70.3 | 0.2 |
| 계 | | | 6,269 | 213 | 2,105,636.5 | 411,01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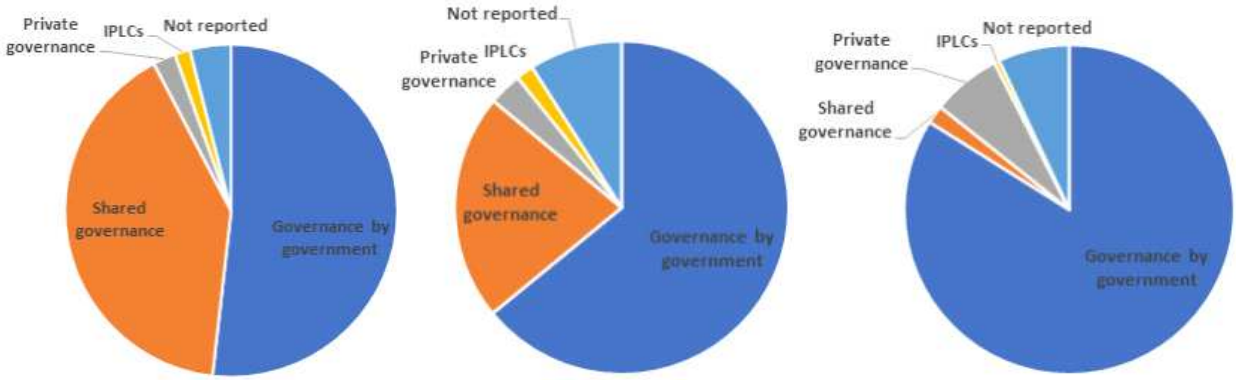
※ WCPA 분류에 따라 연안 지역의 경우 해양으로 분류하였으며 육상+해상 면적 표기

- (지정목적) 생물다양성 최우선보전(9%),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등 2차적보전(7%), 미보고(85%)*
  * 전체 개소수의 83%를 차지하는 스웨덴 사례가 보전목적을 보고하지 않은 체 WD-OECM 등록되었음. 스웨덴 사례 제외 시 최우선 보전 51%, 2차적 보전 41%, 부수적 보전 1%

- (주요 보전 지역) KBA, IBA,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 서식지, 보호지역 주변 완충지역, 경관보전지역, 유역·수계관리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학술림 등

- (보전수단) 법·제도적 수단(42개 유형), 기타 수단(28개 유형)
  - UNESCO MAB Programme, Ramsar Convention
  - 국가/지자체법, 관리계획, 공간계획 상 자연보전지역, 사유재산권 등
  - 계약/협정, 자체규정, 자치규약, 관습법 등

- (거버넌스) 정부주도형(91%), 공동 거버넌스(5%), 민간 거버넌스(1%), 원주민/지역공동체(0.2%)*
  * 전체 개소수의 83%를 차지하는 스웨덴 사례가 모두 정부주도형 OECM임. 스웨덴 사례 제외 시 정부주도형 47%, 공동 거버넌스 31%, 민간 거버넌스 4%, 원주민/지역공동체 거버넌스 1%




(a) 거버넌스 유형별 OECM (2023년 5월)

(b) 거버넌스 유형별 OECM (2021년 5월)

(c) 거버넌스 유형별 보호지역 (2021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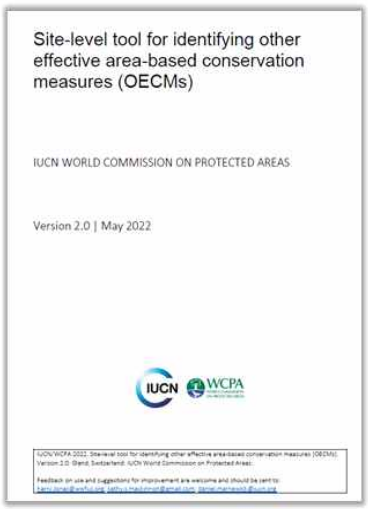
보호지역 및 OECM 거버넌스(UNDP 외, 2021; UNEP-WCMC, 2023)

# 3. 자연공존지역(OECM) 글로벌 표준










## 1) (2018) CBD Decision 14/8 annex III: OECM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문

- OECM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서비스 보전에 중요 역할: 보호지역을 보완하여 연결성, 대표성, 광역경관 통합, 효과성/공정성,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 기존 보호지역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강화
- OECM은 해양, 육상 및 담수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의 장기적인 현지-내 보전 기회를 제공(명확한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와 지속가능한 인간 활동 허용 가능) → OECM 인정을 통해 기존 생물다양성 가치를 유지하고, 보전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장려책이 될 수 있음
- OECM 잠재성: 성공적 보전, 위협 감소/제거, 복원력 증대 등(생태계 접근법, 예방적 접근에 부합)
- OECM 인식은 적절한 협의를 거쳐야 함(관련 거버넌스 당국, 소유자, 권리보유자, 이해관계자, 대중 등)
- 생물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지속적 성과 확보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함(특히 위협 방지 및 대응 등), 적법한 당국의 거버넌스 역량 증진
- 원주민/지역공동체 영토 내 OECM 인식은 자유로운 사전통보승인을 적절하게 동반한 자체 파악
- OECM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와 주체의 역할을 인식하고 알리며, 가시화함

<표 1> 생물다양성협약(CBD)의 OECM 발굴 결정인자(criteria)

| **OECM Criteria:** CBD Decision 14/8 annex III 내용 요약정리 |
|---|
| 1 **보호지역 아님 (Not a protected area):** 보호지역, 그 일부로 인정되거나 보고되지 않았으며, 타 기능/목적을 위해 지정 |
| 2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공간 (Geographically defined space):** 규모/면적 기술(필요시 3차원), 지리적 경계 기술 |
| 3 **적법한 거버넌스 조직 (Legitimate governance authorities)** : 보전 성취에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이 있음, 거버넌스는 단일기관 또는 협력적으로 이뤄짐 |
| 4 **관리되는 (Managed)** : 보전을 위해 긍정적/지속적 성과를 성취하는 방식으로 관리, 관계 당국 및 이해관계자가 파악되었고 관리 참여, 위협 관리 능력 등이 있음 |
| 5 **효과적인 (Effective)** : 생물다양성의 현지-내 보전을 위해 긍정적/지속적인 결과를 성취하거나 이를 기대함. 기존 위협 또는 예상되는 장래 위협에 대한 대응 메커니즘 등이 있음 |
| 6 **장기적 지속가능성(Sustained over long term)** : 보전 수단이 장기적으로 존재. 지속성은 거버넌스/관리 연속성과 관련되며, 장기적은 생물다양성 성과와 관련 |
| 7 **생물다양성 현지-내 보전 (In 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생물다양성 속성(예: 희귀종, 멸종위기종/군집, 생태계 대표성, 서식지 제한 종, KBA, 중요 생태계 기능/서비스, 연결성) 확인 |
| 8 **정보와 모니터링 (Information and monitoring):**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진 생물다양성 특성뿐 아니라 가능한 해당 지역의 문화/정신적 가치와 효과성평가를 위한 거버넌스와 관리 상황 포함 |
| 9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생태계 기능/서비스 상호작용 및 균형을 고려하여 긍정적 생물다양성 결과. 부정적 영향 없어야 함 |
| 10 **문화/영적/사회·경제적/기타 지역적 가치 (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 해당 지역에 문화적/정신적/사회·경제적 가치 및 기타 지역 관련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거버넌스 및 관리 조치가 이들 가치를 파악, 존중 및 유지 |

## 2) (2019) IUCN Guideline: Recognising and report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 4단계 접근: 1단계(보호지역 여부) → 2단계(OECM 기본 특성) → 3단계(장기적 보전 성과) → 4단계(현지-내 보전 목표 부합성)
- 관할 기관이 아닌 다른 당사자가 절차를 관리하는 경우: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동의원칙 적용, 관할 기관의 이해관계 확인
- 지침과 선별 기준을 자세히 읽고 논의하며, 해당 지역의 지역기반 보전과 관련해 다양한 접근 방식에 정통한 사람으로 구성된 검토 팀 소집
- 선별 도구 적용 전에, 기존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의 위치 관련 포괄적인 지도/정보 수집(비교를 통한 상호관계 이해 증진)
- OECM으로 평가된 개별 지역을 4단계 선별 테스트로 각각 검증
- 4단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지역을 후보 OECM으로 판별하고, 국가별로 조정된 실증 기반 평가 도구를 사용해 평가

- 평가 절차를 통과한 OECM을 WDPA에 보고
-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기준별 판정 사유를 기록. 이 정보는 관리/관할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을 OECM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원하는 경우 위 절차를 다시 적용

### 3) (2022) Site-level tool for identify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

- 개별지역 평가를 위한 3단계 접근 제시

**Step 1 Screening: Identifying a Potential OECM**

- 필요한 정보: name, location, designation, governance or management, etc.
- Criterion 1: The site is not a protected area (PA)
- Criterion 2: The site is likely to support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Step 2 Consent for Full Assessment**

- 필요한 정보: 주요 관리/관할 기관, 연락처(주요이해관계자/권리보유자), 의견수렴 내용
- Securing and Documenting Consent

**Step 3 The Full Assessment: Recoginsing an OECM**

**3-1 Identification and conservation of the biodiversity value of the site**

- 필요한 정보: 경계, 규모/형상, 가치(생물다양성, ES 등), 위협, 장기 목적(보전 성취 관련성), 관리활동(보전 성취 관련성)
- Criterion 3: The site is a geographically defined
- Criterion 4: The site is confirmed to support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 Criterion 5: Activities which threaten the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of the site are prevented or mitigated
- Criterion 6: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the site results in the *in situ* conservation of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3-2 Assessment of Sustained and Equitable Governance and Management**

- 필요한 정보: 장기적 관할/관리 근거, 공정한 거버넌스(권리보유자 참여 등)
- Criterion 7: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re likely to be sustained
- Criterion 8: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ddress equity considerations

### 4) (2023) Site-level tool for identify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5)]

- 기 개발된 지침서(2022)의 내용을 보완하여 개별 대상지가 OECM으로 적합한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침 발간: UNEP-WCMC 데이터 매뉴얼(WD-OECM) 연계, 평가요약 및 다음 단계 제시 등
- 지침서 적용을 통한 평가: 해당 대상지 관할기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은 다른 권리보유자/이해관계자 등
- 1단계(선별평가, 잠재 OECM 확인): ①보호지역(PA) 여부, ②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 기여 가능성
- 2단계(종합평가에 대한 동의): 관리주체의 동의(관리관할주체 정보, 거버넌스 유형, 동의 확보 문서화)
- 3단계(종합평가, 6개 기준을 통한 OECM 확인): 생물다양성 가치(③명확한 경계, ④생물다양성 가치 확인), 관리·관할을 통한 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의 현지-내 보전(⑤관리·관할 제도/장치, ⑥관리·관할을 통한 보전 성취/가능성, ⑦장기지속성), 공평한 관리·관할(⑧관리·관할 형평성 고려)
- OECM 확정시 다음 단계: 평가결과 문서화 자료 관리·관할 기관 전달, 평가 절차 및 증빙 데이터 문서화, 관할 국가/지역 DB 보고, WD-OECM 보고




5) Jonas, H. D., MacKinnon, K., Marnewick, D. and Wood, P. (2023). Site-level tool for identify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 First edition. IUCN WCPA Technical Report Series No. 6. Gland, Switzerland: IUCN.

# 4. 우리나라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기준(안)

## 1) 우리나라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시 고려 사항

- **우리나라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을 위한 기본원칙(고려사항)(안)**

1. 글로벌 정의 부합성(보호지역 또는 OECM) 우선 적용
2. OECM 개념의 친화성 증진을 위해 번역어가 아닌 한국적 용어(국가명칭) 사용[6)]
3. OECM 적합성 평가는 개별지역(site)별 신중한 검토 필요(불가피할 경우 유형/그룹별 검토)
4. 다양한 권리보유자/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네트워크 구축(이해관계자 연합, 소통 플랫폼, DB/정보 구축·공유 등)
5. 수단·조치(measures)의 지속성, 장기적 생물다양성 보전·증진 노력
6. 대상 지역의 가치를 검토할 때, 생물다양성 가치를 공유하는 주변지역과 더불어 검토(광역 관점, 연결성·온전성, 복원 지역은 보전 성과 발현, 여타 연관된 가치의 종합적 고려)
7. 기존 보호지역과 연계한 보전체계 정립

## 2) 우리나라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결정인자(Criteria) 및 발굴 과정(안)

- 기존 OECM 관련 글로벌 표준에서 제시한 결정인자(Criteria)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을 위한 선별 결정인자와 발굴 과정(안) 제시
- OECM의 정의에서 담고 있는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CBD, 2018)에서는 10개의 결정인자(criteria)를 제시하고 있으며, IUCN에서 발간한 지침(2019, 2022)에서도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발굴 단계(4단계 또는 3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CBD에서 제시한 10개 결정인자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지리적 경계(6.27/7점)'와 '관리·관할지속성/장기 보전성과(6.14/7점)'가 가장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보호지역 여부(6.0/7점)'와 '관리되는(6.0/7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효과적인 OECM 발굴 적용을 위해 1단계 선별과정에서 자연공존지역(OECM)의 핵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결정인자로 4개 항목[7)]을 도출하고(1. 보호지역 여부, 2. 지리적 경계, 3. 거버넌스·관리, 4. 생물다양성 가치), 향후 (3단계)발굴·등록단계에서 2개 결정인자를 추가하여(3-1. 거버넌스와 관리의 효과성과 지속성, 4-1. 생물다양성 가치의 장기적 보전성과) 심층진단을 수행하도록 구성[8)]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24-2028(관계부처 합동, '23.12.): 결정인자 및 검토·적용 고려사항 제시

---

6)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24-2028(관계부처 합동, '23.12.) **"자연공존지역"명명**(향후 논의를 통해 변경 가능)

7)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 이용 유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유지 비율이 높아서, 자연공존지역 추진 선별과정에서 대상지와 관리·관할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계와 관리·관할 주체에 대한 내용을 1단계(선별과정)에서 함께 검토

8)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Vol.37, No.4, 2023
3단계 종합평가에서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평가자료 문서화를 병행하여 구체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진

| OECM 결정인자 | 검토·적용 시 고려사항 |
|---|---|
| 보호지역 여부 | ①KDPA 또는 WDPA 등재, ②지정·관리 목적(생물다양성·생태계 보전 여부) |
| 지리적 경계 | ①대상지 위치(주소, 좌표 등), 면적 정보 |
| 생물다양성 가치 | ①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가치 ②연관된 문화·영적·사회경제적·지역적 가치 |
| (장기)보전성과 | ①장기적·광역적 가치를 판단할 경우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생태자연도, 연결성·완전성 등 판단 가능한 정보(시계열 항공, 위성영상 등) |
| 관할·관리체계 | ①관할·관리 주체 및 관리 접근방식(법, 협약, 계획, 관습 등), ②이해관계자·권리보유자, 거버넌스 유형, ③위협 이슈에 대한 대응 수단과 그 효과성 진단 |
| 관할·관리체계 지속성 | ①관할·관리체계의 장기 지속성 유지 방법(법·제도 근거, 소유·점유 특성 등), ②이해관계자·권리보유자 참여방식, ③보전성과 기여 여부 |

< 우리나라의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을 위한 결정인자(criteria) >

| OECM Definition (CBD, 2018) |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ce on OECM(CBD, 2018) | Recognising and reporting OECM (IUCN 2019) | Site-level tool for identifying OECM (IUCN 2022) | K-OECM Screening Criteria |
|---|---|---|---|---|
| other than a Protected Area | ①Not a protected area | T-1 Not already recognized and/or recorded as a protected area | S-1/C-1 not a protected area | 1. Not a Protected Area |
| Geographically defined area | ②Geographically defined space | T-2-1 geographically defined space (location) | S-3/C-3 geographically defined area | 2. geographically defined area(space) |
| governed | ③Legitimate governance authorities | T-2-2 Sustained governance and management | S-3/C-7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re likely to be sustained<br>S-3/C-8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ddress equity considerations | 3. governance and management (3-1 effective and sustained) |
| managed | ④Managed | T-2-4 managed | S-3/C-5 Activities which threaten the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of the site are prevented or mitigated | |
| achieve positive | ⑤Effective | T-2-3 Effective | S-3/C-6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the site results in the in situ conservation of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 |
| sustained long-term outcomes | ⑥Sustained over long term | T-3 conservation outcome will endure over the long-term | S-3/C-7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re likely to be sustained | 4. Biodiversity Value (4.1 long-term conservation outcome) |
| in 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 ⑦In 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 T-2-3 in-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 S-1/C-2 likely to support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br>S-3/C-4 confirmed to support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br>S-3/C-6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the site results in the in situ conservation of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 |
| | ⑧Information and monitoring | | | Basic Information Required (objectives, relevant values....etc) |
| *associated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 ⑨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 | Information required<br>(Ecosystem Services and cultural, spiritual and local economic values, List the values of the site) | |
| *where applicable, 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 | ⑩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 | | | |
| | | T-4 Ensure that an in-situ area-based conservation target | | |

**※ 결정인자(Criteria)별 상세한 내용(결정인자 국문명칭 등)은 [참고 2]에 제시된 번역서 링크 참고**

## 5. 우리나라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단계(과정)별 주요 검토사항(대상지 적용)

### 1) 준비 단계

- 해당 대상지의 기초자료 구축(1차 선별 단계의 결정인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정보 포함)
- 기초자료 주요 정보(안): 지정·관리 목적, 지정·관리 현황(지정 기간), 관리·관할주체/이해관계자, 지정근거 및 관리수단 등

< 자연공존지역(OECM) 대상 목록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항목(예)>

*OECM 판단 여부 확인을 위한 BR 기초정보: Biosphere Reserve(Buffer zone, Transition area)*

| | |
|---|---|
| 지정·관리 목적 |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발전 추구<br>(인간과 환경 사이의 균형있는 관계를 촉진하고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조화 추구) |
| 지정 현황 | 완충구역: 5.040.0㎢ (육 2,332.5㎢ / 해 2,707.6㎢)<br>협력구역: 9,502.2㎢ (육 4,581.9㎢ / 해 4,920.5㎢)<br>• 완충구역: ①설악산 (육)223.1㎢, ②제주도 (육)523.5㎢, (해)199㎢, ③신안 다도해 (육)232.1㎢, (해)1,020.1㎢, ④광릉숲 (육)16.6㎢, ⑤고창군* 265.5㎢, ⑥완도군 (육)121.2㎢, (해)1,488.2㎢, ⑦연천 임진강 (육)208.1㎢, ⑧강원생태평화지역 (육)532.6㎢ ⑨순천시 (육)209.9㎢<br>*고창군은 해양면적(63.79㎢)은 있으나 용도지역별 구분 재확인 필요<br>• 협력구역: ①설악산 (육)394.5㎢, ②제주도 (육)1,032.9㎢, (해)1,716.7㎢, ③신안 다도해 (육)623.2㎢, (해)1,153.4㎢, ④광릉숲 (육)220.5㎢, ⑤고창군 (육)314.7㎢, ⑥완도군 (육)260.1㎢, (해)2,050.4㎢, ⑦연천 임진강 (육)312.3㎢, ⑧강원생태평화지역 (육)788.9㎢, ⑨순천시 (육)634.9㎢ |
| 관리 현황 | 관리계획(5년 주기)<br>10년 주기 보고 |
| 관리·관할주체,<br>주요이해관계자 등 | MAB 한국위원회, 시·군, 시·군위원회 및 센터, 주민(협의체) |
| 지정근거/관리수단<br>(법/정책/협약 등) | 「자연환경보전법」, 지자체별 조례 및 관리계획,<br>MAB 한위 신청지침('15년 제정, '19년 개정) 및 기술지침('22 제정) |
| 기타 특성 등 | WNBR 규정, MAB 2016-2025 전략 등 국제적 권고사항 고려 |

## 2) 1단계 선별(1차 Screening)

- 준비 단계에서 구축된 유형의 특성 및 대상지 기초자료를 토대로 1단계에 적용되는 4가지 결정인자(criteria)를 활용하여 선별 단계 이행
- **선별 결정인자: 1. 보호지역 여부, 2. 지리적 경계, 3. 거버넌스·관리, 4. 생물다양성 가치**
- **선별 주체: 관리·관할주체/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예: IUCN WCPA, IUCN EAGL, 국가보호지역확대포럼, 자연공존지역 전문가그룹, 생물다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 **1차 선별 단계: 검토 항목**

| **검토 항목** (Criteria/Question) | **판단 시 검토 사항** | **판단 결과 (V)** | | |
|---|---|---|---|---|
| 1. 기존 **보호지역**이 아님 | – 국가 보호지역 통합DB (KDPA) 등재 여부 (https://kdpa.kr)<br>※ (필요시)대상지 지정·관리 목적 관련 정보 확인<br>※ KDPA-WDPA 불일치, 보호지역 정의 부합성, 일부 지역 누락 등 기존 KDPA 개선 필요사항은 별도 검토 | 예 | – | 아니오 |
| 2. (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가 있는가? | – 기존 인증 지역(부분 또는 전체) 포함 여부(KBA, EAAFP, Ramsar, IPA, EBSA, IMMA)[9]<br>– (중요성 확인 참고사항) Red-list, 국가 중요종(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보호생물, 천연기념물, 특별산림보호대상종(희귀, 특산), 지자체 보호종/깃대종, 희귀종, 멸종위기종, 서식지 분포 제한 종, 고유종 서식 지역, 생태계 대표성/연결성 중요지역 등 | 예 | – (추가검토) | 아니오 |
| | | <평가요약/판단근거><br><참고 자료> | | |
| 3. 대상지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가? | – 지도에 표시 가능한 경계(합의된 경계)<br>※ 위치(주소)/면적, 디지털 형식(GIS) 정보, 고시/계획도면<br>※ 규모가 큰 지역의 일부분, 다양한 유형이 중복된 경우 등을 고려 관리·관할 주체와 대상지 경계 검토<br>– (필요시)생태계유형/지형/지물 경계, 관습 경계, 행정 경계 적용<br>※ 관리·관할 주체의 인지적 경계는 있으나 물리적 경계 설정이 불명확한 경우, 관리·관할주체와 주요 이해관계자권리보유자가 공감하는 경계 활용<br>※ 특정 사유로(예: 군사 목적 등) 위치 정보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경우 점(Point)으로 대략적 위치 표기 및 면적 정보만 활용 검토(부득이한 경우 종합통계에만 반영하고 위치 정보 미공개 등)<br>– 해양생태계: 저서성 및 심해 생태계 포함(수직적 지역 구분 지양) | 예 | 불확실/부분적 | 아니오 |
| | | <평가요약/판단근거><br><참고 자료> | | |
| 4. 대상지를 **관리·관할**하기 위한 **제도나 수단이 하나 이상** 있는가? | – 관리·관할 근거 확인: 법, 제도(관습 포함), (집단)합의, (자체/집단)규약, 계약/협약, 계획, 프로그램 등<br>※ (필요시)대상지에 적용되는 모든 관리·관할 유형과 상호 관계성 파악(International, Regional, National, Local 등)<br>– 관리·관할 주요 이해관계자/권리보유자 현황 및 거버넌스 유형 확인<br>(필요시) 기타 이해관계자/권리보유자의 경우 3단계에서 조사 | 예 | 불확실/부분적 | 아니오 |
| | | <평가요약/판단근거><br><참고 자료> | | |

9)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람사르 습지(Ramsar), 중요식물보호지역(IPA),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지역(EBSA), 중요해양포유류지역(IMMA)

• (1차 선별 단계_적용 예시)

<표 4> 자연공존지역(OECM) 1차 선별을 위한 검토항목_적용(예시)

| 검토 대상 | 자연공존지역(OECM) 1차 선별인자(Screening Criteria) (1.예 / 2.아니요 / 3.추가 검토 필요) | | | | 판단 결과/이유 |
|---|---|---|---|---|---|
| | 보호지역 여부 | 지리적 경계 | 관리·관할 | 생물다양성 가치 | |
| XXXX 보전재산 | X | 1 | 1 | 1 | 부합 |
| OOO 도시공원 | X | 1 | 1 | 2 | 현지-내 보전 가치 (미부합/재검토) |
| OOO도 (절대보전무인 도서/주변해역) | X | 1 | 1 | 1 | 부합 / 보호지역 등재 가능성 병행 검토 |

※ 1단계에서 일부 '불확실/부분 부합'으로 판단되거나(명확한 경계, 복합적 관리·관할 제도/수단), 2단계에서 신청 내용이 미흡한 경우(GIS 자료 등) 3단계에서 심층적 정보 보완·구축을 통해 최종자료 구축 및 최종 결과서 생성 추진

## 3) 2단계 공감대 형성(이해관계자 확인, 공감대 형성, 인식 확산)

- 관련 이해관계자 확인 및 연락정보 구축: 관리·관할(governance) 주체, 주요 이해관계자/권리보유자 확인 및 연락처(정보) 확보
- 자연공존지역(OECM) 관련 기초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확산, 소통과정 및 의견수렴 내용 정리
- 자연공존지역(OECM) 목록화(등록) 관심 여부 확인 및 향후 제도적 연계·보완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자연공존지역 신청서 양식(안):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수정보 중심으로 작성(추가 정보는 3단계에서 확인 가능)

| 구 분 | | 내 용 |
|---|---|---|
| (필수)대상지명(Name) | | (필수)(국문)<br>(선택)(영문) |
| (필수)신청기관명(신청자) | | _____ *sign:* _____ |
| (필수)관리/관할기관, 연락처 | | *명칭(관할 and/or 관리기관):* E-mail/Phone: |
| (필수)지정 유형 | | (예) 보전재산, 보전협약지, 하천구역 특별보전지구 등 |
| (필수)자연공존지역 부합 여부 | | ☐ Q1~Q4 전체 부합 ※ 선별(screening)결과[10] |
| 지정 상태 (Status) | (필수)지정 근거 | ☐ 법 ☐ 조례 ☐ 협약/계약 ☐ 자체규약<br>☐ 계획 ☐ 기타:_____ |
| | (선택)지정 수준 | ☐ International ☐ Regional ☐ National ☐ Local |
| (필수) 위치/주소 | | |
| 면적(area) | (필수)육상(㎢) | _____㎢ ☐ 해당 없음 |
| | (필수)해양(㎢) | _____㎢ ☐ 해당 없음 |
| (선택)지정연도(Status year) | | |
| (선택) GIS 자료 제출 필수(3단계)[11](파일 이름은 '대상지명'과 동일하게 기재) | | |
| (선택)거버넌스 유형 (Governance Type) | | ☐ 정부(Federal or national ministry or agency)<br>☐ 준정부 기구(Sub-national ministry or agency)<br>☐ 정부 위탁 관리(Government-delegated management)<br>☐ 접경지역(Transboundary governance)<br>☐ 협력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하나의 의사결정 기관이 협력)<br>☐ 공동거버넌스(Joint governance)(의사결정 권한/책임 주체가 둘 이상)<br>☐ 개인(Individual landowners)<br>☐ NGO (Non-profit organisations)<br>☐ 영리단체(For-profit organisations)<br>☐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ies)<br>☐ 모름(Not reported) ☐ 기타:_____ |
| (필수)소유권 (Ownership type)<br>※복수 선택 가능 | | ☐ 중앙정부(State government) ☐ 지방정부(Local government)<br>☐ 공동체 소유(communal) ☐ 개인(individual landowners)<br>☐ NGO (Non-profit organisations) ☐ 영리단체(for-profit organisations)<br>☐ 공동 소유(multiple ownership)<br>☐ 불분명(contested) / 모름(not reported) |
| (필수)기타 권리보유자/이해관계자 | | ☐ 이해관계자/권리보유자 그룹(개인): 이름, 연락처, 신청 참여(합의) 여부<br>1. , E-mail/Phone: ☐ 참여(합의)<br>2. , E-mail/Phone: ☐ 참여(합의)<br>3. , E-mail/Phone: ☐ 참여(합의)<br>☐ 기타 권리보유자/이해관계자 없음 |
| (선택)관리 목적 (Conservation objectives) | | ☐ 생물다양성 최우선 관리<br>☐ 2차적 관리(최우선 관리 목적이 따로 있으나 생물다양성도 고려하는 경우)<br>☐ 기타:_____ |
| (선택)기타 대상지 특성 정보 | | *(사회·경제적 여건·특성, 관리·관할체계 지속성, 생물다양성 가치의 장기적 동향 및 보전 의도 등)* |

### 4) 3단계 발굴·등록(개별 대상지 심층 확인, 정보구축 등)

- 1차 선별 과정 및 2차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친 후, 개별 대상지 특성 및 현황 정보에 기반하여 자연공존지역 부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층진단 단계
- 준비 단계, 1차 선별과정, 2차 공감대 형성과정 등에서 기 구축된 정보를 참고하되, 심층 진단을 위한 추가 정보(3-1 거버넌스와 관리의 효과성과 지속성, 4-1의 생물다양성 가치의 장기적 보전성과)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확인 등 병행
- 의사결정과정에서 보호지역 전문가,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그룹 활용
-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등록 과정이 생물다양성 가치를 포함한 해당 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와 효과적 수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증진·확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추진 고려
- 개별지역 심층 진단 방향: 자연공존지역 발굴 결정인자(criteria)별로 검토·적용 고려 사항을 참고하여 모든 관련 항목을 검토하되, 검토 시 활용된 정보, 판단 근거, 논의 내용 등 관련 자료집을 구축하여 향후 지속적인 정보관리 필요(향후 WD-OECM 등록 기초자료 활용 등)
  ※ 해당 지역이 K-M GBF의 다른 실천목표(예: 지속가능 생산/이용 등)와 연관되는 경우, 이의 중복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리·관할 주체와의 논의를 통해 등록 여부를 적절히 판단해야 함
- 자료집에 포함해야 할 필수 정보[12]: 명칭(관리·관할기관이 부여한 명칭), 지정 유형(예: 보전재산), 지정 구분(국제, 지역, 국가, 기타), 전체 면적(㎡, ㎢), 해양 포함 여부(면적: ㎡, ㎢), 지정 근거·상태/효과적 수단(법·공식 수단, 기타 수단, 제안 상태 등), 지정 시기/기간, 지리정보(면 또는 점) 등

10) 1차 선별결과 종합(모두 부합): Q1 보호지역 아님, Q2 생물다양성 가치, Q3 명확한 경계, Q4 관리관할 제도/수단
※ Q3~Q4의 경우 불확실/부분적으로 응답되더라도, 주관기관(전문가 협의)의 판단에 따라 3단계 추진 가능

11) WD-OECM 등록신청 시 필수 정보이기 때문에 자연공존지역(OECM) 유형 중 GIS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단계 과정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12) UNEP-WCMC(2019) User Manual V 1.6 (WDPA and WD-OECM) 참고.

• **3단계: 자연공존지역 확인을 위한 심층 확인(종합 평가)**

<table>
<tr><th>검토 항목<br>(Criteria/Question)</th><th>판단 시 검토 사항</th><th colspan="3">판단 결과 (V)</th></tr>
<tr><td rowspan="2">5. 대상지가 중요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13] 가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d><td>– (Q2 가치 확인 참고사항) 연계 확인·검토<br>– 생태자연도/국토환경성평가도/도시생태현황도 등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 구축된 정보 적극 활용<br>– 조사/모니터링 보고서, 문헌(연구) 정보, (필요시)전문가/전통지식 보유자 의견, 시민과학 DB·정보 등 확인<br>– (필요시)대상지 내부 가치와 더불어 인접 지역과 연계한 광역 가치 보완·연계 검토, 긍정적 발전 가능성(미래 가치), 지역적 생물다양성 가치 고려<br>–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u>인공이 가미된 복원지역이라도(준자연지역)</u>, 주변지역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의 경우 자연공존지역(OECM) 검토에 포함(복원효과 관점, 광역적 관점: 연결성(connectivity), 완전성(integrity) 기여 등)<br>※ 복원 계획지역(보전성과 미성취)은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br>※ 고려사항: 생태적 완전성, 이동/확산, 야생동물 생활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생태계, 광역적 관리, 핵심 생태계서비스 제공, 전통적 이용 등</td><td>예 / 불확실/부분적 / 아니오<br><평가요약/판단근거><br><참고 자료></td></tr>
<tr><td>– (적용 가능한 경우) 연관된 문화/영적/사회·경제적/기타 지역적 가치 확인[14]<br>※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더불어 연관된 대상지의 특정 가치(지역적 가치)와의 상호작용 및 영향 파악</td><td><평가요약/판단근거><br><참고 자료></td></tr>
<tr><td rowspan="2">6. 대상지에서 확인된 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가 <u>장기적으로 현지 내에서 보전</u>될 가능성이 충분한가?</td><td>– 대상지의 관리·관할 접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이는 쉽게 번복하거나 없앨 수 없음 (다른 목적으로의 전환 의도가 없음)<br>– 장기지속성 판단: 관리·관할 기관/조직의 장기적 유지 및 보전 의도(conservation intention) 보장 근거(법, 관습, 공식선포, 계획/계약 문서, 소유/점유 특성 등)<br>※ 장기적임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계획/보전협약(10+10)의 중장기 기준이 될 수 있는 20년(최소기준) 활용 검토 (예: IUCN 민간보호지역 기준 25년(2014), 호주의 경우 보호지역 영구/99년, OECM의 경우 25년 보전의도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최종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호지역과 동일 기준 적용 결정)<br>※ 장기적 보전성과[15] 증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기술/설명<br>※ 장기적 보전 성과(의도)가 불확실한 경우, 확인 과정을 통해 장기적 보전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 검토</td><td>예 / 불확실/부분적 / 아니오<br><평가요약/판단근거><br><참고 자료></td></tr>
</table>

13) 특정 생태계서비스(예: 휴양, 수원/수질 보호 등) 유지·관리

14) 지속가능한 이용(전통 방식, (저영향)지속가능 생산/채취 등), 복원/복구지역(복원·보전 효과), 문화/정신/사회경제적/기타 지역적 가치 등

15) 장기적 보전 성과를 시계열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참고(항공/위성영상, 각종 법정 주제도 등), 광역적 가치를 판단할 경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함께 분석

| 검토 항목<br>(Criteria/Question) | 판단 시 검토 사항 | 판단 결과 (V) |
|---|---|---|
| 7. 대상지의 관리·관할이 **위협 요인을 예방·완화**하면서 대상지의 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를 보전**하는가, 또는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가? | – 주요 위협요인(예: 불법 벌채 및 채취, 오염, 침입외래종 등) 확인, 대응수단(관리활동)과 대응 영향(효과성) 확인<br>※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향 저감/제어 수단의 적절성 등 관련 정보 구축 필요<br>– 관리·관할 체계의 보전성과 기여 여부, 미래 가능성 검토<br>※ 모니터링 프로그램, 관리 활동(대응) 영향, 결과 활용에 대한 정보 검토<br>– 관리·관할 체계의 미래(잠재) 위협에의 효과적 대처 가능성<br>※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미흡한 지역: 보전 노력 없음(위협 대응 안 됨, 갈등/불안), 유해산업 활동지역, 산업 규모의 지속가능이용(다른 목표(target 5, 10)로 보고), 단일 종 보전(주변 생태계 미고려), 복원성과 미발현 지역 등 | 예 / 불확실/부분적 / 아니오<br><평가요약/판단근거><br><참고 자료> |
| 8. **공평성**의 3개 측면**(인정, 절차, 분배)**을 다루는 노력이 관리 및 **관할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가? | – 주요 이해관계자/권리보유자의 권리 인지, 참여 절차, 혜택 공유 현황 확인<br>– 공평성 문제를 다루는 노력(정책, 장치, 수단)이 있음(향상 가능성 충분, 최근 인권침해사례/발생가능성 없음)<br>※ 관리·관할개선(효과성/형평성)을 위해 법제도적 틀 및 지원/협력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정보 구축 필요<br>– (상황에 따라 가변적) 일정 수준의 공평성 기준을 담보하기보다는 긍정적 발전의 가능성을 보고 자연공존지역(OECM) 여부 판단[16]<br>– 관리·관할 주체가 하나인 대상지에서는 공평성 문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이 경우 '예'라고 답하고, 해당 대상지에 어떤 공평성 문제도 적용하지 않음) | 예 / 불확실/부분적 / 아니오<br><평가요약/판단근거><br><참고 자료> |

## 5) 자연공존지역(OECM) 최종결과서 생성

-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한 대상지는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확정(confirmed)**, 관리주체와 이해관계자 동의 필요**(최종 결과서 합의)**
- '예'와 '불확실/부분적'이 섞여 있거나 모두 '불확실/부분적'일 경우, 추가 정보나 기타 변경을 통해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확정될 때까지 보완 필요
- '아니오'가 하나 이상인 대상지는 현재 자연공존지역(OECM)이 아님. 향후 대상지의 변화로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평가 가능

16) 권리에 관한 오랜 분쟁이 있더라도(예: 역사적으로 중요한 토지 권리에 관한 분쟁) 자연공존지역(OECM) 인정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됨. 평가에서는 분쟁에 의한 제약을 염두에 두면서 긍정적 발전의 가능성을 고려

- **자연공존지역 최종결과서 작성**

| 단계 | 기준(Criteria)/평가 질문[17] | | 평가 결과 (V) | | |
|---|---|---|---|---|---|
| | | | 예 | 불확실/부분적 | 아니오 |
| 1 단계 선별평가 | 보호지역 여부 | Q 1. 보호지역 아님 | □ | 해당없음 | □ |
| | 생물다양성 가치 | Q 2. 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 지님 | □ | 해당없음 | □ |
| | 명확한 경계 | Q 3. 지리적으로 한정된 경계를 지님 | □ | □ | □ |
| | 관리·관할 수단 | Q 4. 대상지 관리·관할 제도나 수단이 있음 | □ | □ | □ |
| 2 단계 | 자연공존지역(OECM) 등록 추진 합의 | | □ | 해당없음 | □ |
| 3단계 종합평가 | 장기 보전성과 | Q 5. 생물다양성 등 대상지 중요 가치 확인 | □ | □ | □ |
| | | Q 6. 장기적 보전 가능성 | □ | □ | □ |
| | 관리·관할 지속성 | Q 7. 관리·관할의 위기대응/보전 기여 | □ | □ | □ |
| | | Q 8. 관리·관할의 공평성 | □ | □ | □ |

※ **평가결과 문서화**, 확인 과정을 통해 밝혀진 대상지 기초정보, 판단 참고자료, 각종 진단 의견 및 개선 방향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별도 자료집** 구축(대상지 특성 이해, 관리·관할 개선, IUCN Green List 추진 등 활용)

17) 관계부처합동(202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의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결정인자 및 적용 고려사항 (p.32) 참고

# 6. 우리나라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체계(안)

## 1) 우리나라 자연공존지역(OECM) 관련 국가 목표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관계부처 합동, 2023): 2030 실천목표(총 21개 목표) 설정

| | | |
|---|---|---|
| 2050 비전 | 자연과 조화·공존을 통해 자연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가능한 사회 | |
| 2050 목표 | ① 자연생태계 면적·종다양성·유전다양성 유지 | ② 자연이 국민에 주는 혜택 평가·유지·강화 |
| | ③ 유전자원 이용·이익 공유로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확대 | ④ 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이행수단 강화 |

**2030 실천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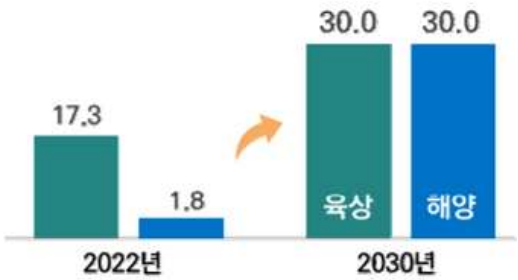
| | | |
|---|---|---|
|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저감 | 1.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 GBF T1 |
| | 2.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 GBF T2 |
| | 3.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 GBF T3 |
| | 4. 국가보호종·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 GBF T4 |
| | 5. 야생생물 검역 및 관리 숙과정 안전망 강화 | GBF T5 |
| | 6. 침입 외래생물 유입 차단 및 방제 강화 | GBF T6 |
| | 7. 생물다양성 유해 오염 저감 | GBF T7 |
| | 8.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 GBF T8 |
| 지속가능이용 및 이익공유확대 | 9. 지속가능한 농·임·수산·양식업 | GBF T9, 10 |
| | 10.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 GBF T11 |
| | 11.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 GBF T12 |
| | 12. 유전자원 이익공유 확대 | GBF T13 |
| 이행과 주류화 수단 강화 | 13. 사회 전 분야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 GBF T14 |
| | 14. 생물다양성과 ESG 경영 | GBF T15 |
| | 15.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 | GBF T16 |
| | 16.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신기술 안전관리 | GBF T17 |
| | 17. 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 및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 GBF T18 |
| | 18. 생물다양성 재원 동원 | GBF T19 (b)~(g) |
| | 19. 국제적 기여 확대 | GBF T19 (a), 20 |
| | 20. 생물다양성 인식·연구 증진 및 이행 관리 강화 | GBF T21 |
| | 21.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GBF T22, 23 |

**3.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① 생태우수지역 지정·발굴 확대
- **육상·해양 면적 30% 확보 노력**
- GIS DB 통합관리 추진

② 생태우수지역 관리체계 개선
- 관리효과성평가 확대
- **자연공존지역 제도적 기반 마련**

③ 자연자원 연계 지역사회 혜택 강화
- 생태관광 활성화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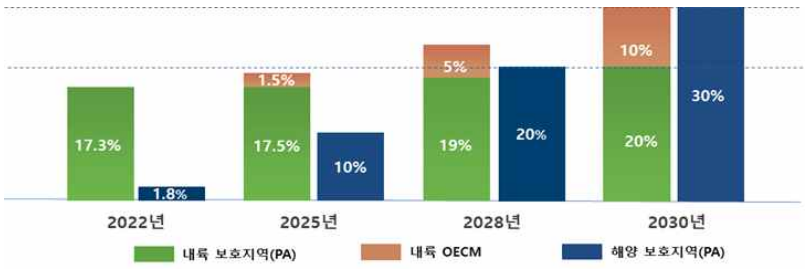


•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23)




<2030 국가 보전 목표>

<주요 성과 지표>




| 전략 | 성과지표 | 現 상황('23.11) | 목표('30) |
|---|---|---|---|
| 보호지역·OECM 확대 | 보호지역(OECM 포함) 비율 (육상/해양) | 17.3% / 1.8% | 30% / 30% |
| | IUCN 녹색목록 인증 개소 수 | 3개소 | 15개소 |
| 보호지역·OECM 관리체계개선 |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습지·생태경관·산림유전자원·해양보호구역) | 일부 이행 | 100% |
| | 연간 보호지역·OECM 자원봉사자 수 | 약 43만명/년 ('21. 국립공원 57,125명) | 40만명 이상/년 ('32. 국립공원 15만명↑) |
| 지역사회 상생기반강화 | 보호지역 내 생활여건 개선마을 (갯벌생태마을, 공원마을 등) | 27개소 | 120개소 |
| | 자연기반 지속가능발전모델 수 (람사르습지도시, 생물권보전지역 등 중복 포함) | 16개소 | 25개소 |

## 2)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체계(안)

-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단계는 준비단계(기초정보 구축)와 함께 3단계의 발굴·등록 과정으로 구성
  - 1 단계: Q1 ~ Q4 적용
  - 2 단계: 자연공존지역(OECM) 등록 합의·신청
  - 3 단계: Q5~Q8 적용: 관련정보/평가자료 문서화

| 단계 | 단계별 주요 내용 | 주체 |
|---|---|---|
| 준비단계 | 기초자료 구축<br>• 지정/관리 목적<br>• 현황(지정연도, 면적(육상/해양))<br>• 관리·관할주체, 이해관계자 파악<br>• 관리현황 확인(관리계획에 따른 활동, 사업, 부작위 등)<br>• 지정근거 또는 관리·관할 수단 확인<br>• 기타 생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 등 | 관리관할 주체(신청기관) |
| 1단계<br>(선별 평가) | 자연공존지역 부합 여부 선별 기준 활용(Q1~Q4)<br>• 보호지역 여부<br>• 생물다양성 가치<br>• 명확한 경계(GIS 파일 구축)<br>• 관리·관할 수단 | 관리관할 주체(신청기관)<br>전문가그룹 |
| 2단계<br>(협의) | 자연공존지역 등록 추진 협의<br>및 신청서 제출<br>(제출처: 국가보호지역통합DB(KDPA) 담당자) | 관리관할 주체(신청기관)<br>이해관계자<br>전문가그룹 |
| 3단계<br>(종합 평가) | 종합평가<br>• 생물다양성 등 중요 가치 확인<br>• 장기적 보전 가능성<br>• 관리·관할의 위기대응/보전 기여<br>• 관리·관할의 공평성 | 전문가그룹<br>+<br>관리관할 주체(신청기관) |
| 국가 목록 구축<br>(한국보호지역통합시스템 등록) | | 환경부 |
| 국제사회 보고<br>(매 연말 세계 OECM 데이터베이스 정기보고/갱신) | | 환경부<br>UNEP-WCMC |

※ 1단계에서 일부 '불확실/부분 부합'으로 판단되거나, 2단계에서 신청 내용이 미흡한 경우, 3단계에서 심층적 정보 보완·구축을 통해 최종자료 구축 및 최종 결과서 생성 추진

※ 평가결과 문서화: 확인 과정을 통해 밝혀진 대상지 기초정보, 판단 참고자료, 각종 진단 의견 및 개선 방향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별도 자료집 구축 권장(대상지 특성 이해, 관리·관할 개선 등 활용)

## [참고1] 자연공존지역 주요 검토대상 유형(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 소관 기관 | 검토대상 유형 | |
|---|---|---|
| 환경부 | 자연휴식지 | |
| |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 | |
| | 하천의 특별보전지구 | |
| 해수부 | 무인도서 | 절대보전/ 준보전/ |
| | 해양용도구역 |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
| | | 연구교육보전구역 |
| | | 안전관리구역 |
| | 자율어업대상지역 | |
| 해수부/지자체 |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법) | |
| 국토부 | 도시지역(녹지지역) | |
| | 관리지역(보전) | |
| | 보호지구(생태계) | |
| 산림청 | 자연휴양림 | |
| | 전통사찰보존구역 / 사찰림 | |
| 국가유산청 | 세계자연유산구역 완충구역 | |
| 농식품부 | 중요농업유산 | |
| 지자체 | 해양보호구역 외 갯벌지역 | |
| 자연환경국민신탁 | 보전재산 / 보전협약지 | |
| 민 간 | 기업 CSR 지역, 종교성지 등 | |

※ 표 내용은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23)”에서 제시한 주요 검토대상 유형(예시)이며, 이외에도 수목원, 식물원, 곶자왈, 생태숲, 도서지역 산림 등도 고려 가능

# [참고2] 자연공존지역 검토를 위한 참고정보/링크

## □ 자연공존지역(OECM) 관련 글로벌 표준

-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14/8 부록Ⅲ (CBD Decision 14/8 Annex Ⅲ). https://www.cbd.int/doc/decisions/cop-14/cop-14-dec-08-en.pdf

- IUCN-WCPA Task Force on OECMs, (2019). Recognising and report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Gland, Switzerland: IUCN. https://portals.iucn.org/library/node/48773

- IUCN-WCPA OECM 특별대책팀(2021).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의 승인 및 보고(한글). Gland, Switzerland: IUCN. https://portals.iucn.org/library/sites/library/files/documents/PATRS-003-Ko.pdf

- Jonas, H. D., MacKinnon, K., Marnewick, D. and Wood, P. (2023). Site-level tool for identify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 First edition. IUCN WCPA Technical Report Series No. 6. Gland, Switzerland: IUCN. https://portals.iucn.org/library/sites/library/files/documents/PATRS-006-En.pdf

- Jonas, H. D., MacKinnon, K., Marnewick, D. and Wood, P. (2024). 자연공존지역(OECMs) 확인을 위한 현장(site-level) 도구. 제1판(한글). IUCN WCPA 기술 보고서 시리즈 6호. 발행인: IUCN, 스위스 Gland. https://portals.iucn.org/library/sites/library/files/documents/PATRS-006-Ko.pdf

## □ 보호지역 여부 확인

| 구분 | 참고정보 |
|---|---|
| 한국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 통합데이터베이스(KDPA) | http://www.kdpa.kr/ |
| 세계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 데이터베이스 | WD-PA/OECM https://www.protectedplanet.net/ |

## □ 우리나라 자연공존지역(OECM) 확인 지침(Version 2.0)

- 한국보호지역확대포럼(KPAF). 2024. 우리나라 자연공존지역(OECM) 확인 지침(v.2.0). 환경부-IUCN-국립공원공단. http://www.kdpa.kr/report/download.do/

□ 생물다양성 가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 구분 | | | 참고정보 |
|---|---|---|---|
| 생물다양성 인증 지역 |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 | Key Biodiversity Area<br>https://www.keybiodiversityareas.org/sites-table<br><br>*국내(40개소): 한강, 한강하구, 선유도, 대성동과 판문점, 연천, 강화도갯벌, 영종도갯벌, 시화호, 남양만, 광릉숲, 철원평야, 경포호, 송지호, 화진포, 천수만, 금강 및 하구, 아산만, 만경강 및 하구, 동림저수지, 유부도, 동진하구, 영남호, 금호호, 고천암호, 강진만, 순천만, 칠발도, 구굴도, 구미해평습지, 우포늪, 주남저수지, 낙동강하구, 북촌, 하도리, 성산포호, 대부도, 영흥도와 선제도, 백수갯벌, 함평만, 무안갯벌 |
|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 |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br>https://www.eaaflyway.net/ |
| | 람사르 습지 | | 람사르사이트 정보서비스<br>https://rsis.ramsar.org<br><br>*국내(26개소): 대암산용늪, 우포늪, 신안장도 산지습지, 제주 물영아리오름, 무제치늪, 두웅습지, 제주 물장아리오름, 오대산 국립공원습지, 강화매화마름 군락지, 제주1100고지, 제주 동백동산 습지, 고창 운곡습지, 한강밤섬, 제주 숨은물뱅듸, 한반도 습지, 순천 동강하구, 고양 장항습지, 문경 돌리네습지, 평두메습지, 순천만·보성갯벌, 무안갯벌, 서천갯벌, 고창·부안갯벌, 증도갯벌, 송도갯벌, 대부도갯벌 |
| | 중요식물 보호지역(IPA) | | Important Plant Area<br>https://www.plantlifeipa.org/home |
| |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지역 (EBSA) | |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br>https://www.cbd.int/ebsa/ |
| | 중요해양포유류지역(IMMA) | | Important Marine Mammal Area<br>https://www.marinemammalhabitat.org |
| 대표성 | IUCN 생태계유형분류(GET) | | IUCN Global Ecosystem Typology<br>https://global-ecosystems.org/ |
| 주요종 | IUCN Red-List | | https://www.iucnredlist.org/ |
| | 국내 법정관리종 | |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부처별 법정관리종<br>https://www.kbr.go.kr/content/view.do?menuKey=935&contentKey=180 |
| | 국가보호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 환경부 지정현황(282종)<br>https://www.nie.re.kr/nie/pgm/edSpecies/edSpeciesList.do?menuNo=200127 |
| | | 해양보호생물 | 해양수산부 지정현황(91종)<br>https://www.meis.go.kr/mes/marineLife/protection/species.do |
| | | 천연기념물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현황(481종)<br>https://www.heritage.go.kr/ |
| | | 희귀·특산식물 | 산림청 지정현황<br>http://www.nature.go.kr/kbi/plant/prtct/KBI_2001_050201.do |
| | 시·도 보호 야생생물 | |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시·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현황(*지자체별 확인필요)<br>- 서울특별시(55종), 인천광역시(24종), 울산광역시(49종), 대전광역시(41종), 광주광역시(56종), 대구광역시(47종), 경기도(29종), 충청북도(10종), 충청남도(9종), 전라남도(42종)<br><br>https://www.kbr.go.kr/content/view.do?menuKey=968&contentKey=213 |
| 주제도 | 생태자연도 | | 환경공간정보서비스<br>https://egis.me.go.kr/map/map.do?type=eco |
| | 국토환경성평가도 | | https://webgis.neins.go.kr/map.do |
| | 도시생태현황도 | | 기본주제도, 비오톱 유형도, 비오톱 평가도 등 |

※ 기타 자연공존지역으로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활용 가능